

검토보고서

안건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지역경제과	19

(2016. 3. 3)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은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2월 25일(목)
- 제출자 : 이봉수외 8명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2월 26(금)

4. 관계법규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 제정이유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으로 동물의 생명 존중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의무 및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안 제3조, 제4조)
- 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동물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안 제5조~제7조)
- 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 동물의 구조·보호 (안 제8조~제10조)
- 마. 보호동물의 공고, 동물보호 및 관리, 반환 등 (안 제11조~제13조)
- 바.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및 소요경비의 징수 (안 제14조, 제15조)
- 사. 길고양이의 관리 및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제17조)
- 아. 명예감시원 위촉 및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제19조)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기동물(길고양이, 개 등)등 동물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여 동물의 복지 향상을 꾀함은 물론 동물의 생명 존중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동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적합하게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동(同)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부터 제19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 가. 안 제1조(목적)~안 제2조(정의)에서 동물보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나. 안 제3조~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의무 및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사항에 대하여
- 다. 안 제5조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 라. 안 제6조~안 제7조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 마. 안 제8조~안 제9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에 대하여
- 바. 안 제10조에서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정하였음
- 사. 안 제11조~안 제13조에서는 보호동물의 공고, 동물보호 및 관리,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아. 안 제14조~안 제15조에서는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와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
- 자. 안 제16조~안 제17조에서는 길고양이의 관리 및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항
- 차. 안 제18조~안 제19조에서는 명예감시원 위촉 및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그간 동물보호 관련법 제·개정 내용을 보면,

- 1991년 축산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를 중심으로 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고,
- 200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중가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등록제와 동물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갈수록 동물학대 방법 등이 다양화되고 잔혹해지고 있으며 특히 유기동물보호소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운영비리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 2011년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을 위해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 2012년 서울시도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로 전부 개정하였으며, 현재 구로구외 49개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치단체 별로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보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임

- 동(同) 조례안은 2016.2.25.~2.29.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동물보호법」 및 타 관련법·등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또한 「동물보호 조례」는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간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조례 없이 「동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 근거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및 「반려동물 등록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으나, 최근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소유자 증가와 더불어 동물학대 및 동물 유기 등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동물의 보호 및 생명 존중 등 동물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은 물론 동물복지위원회 및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등 동물보호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번 조례규정은 동물보호 관리 및 동물존중을 위한 적합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는 자치단체의 경우는 유기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할 만한 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서울시 타 자치구의 경우에도 경기도 양주군 소재 위탁시설 또는 관내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치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구는 타 자치구와는 다르게 관내 16개 동물병원이 연대한 공동수급체 방식으로 위탁 운영하여 동물보호센터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바,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하는 한 별도의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규

동물보호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23호, 2015.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8.13.〉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7.1.)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8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동물복지축산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 ② 동물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④ 그 밖에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 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3. 도박·광고·오락·유통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2012.7.1.) 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시행일: 2013.1.1.) 제12조(시장·군수·구청장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 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

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본다.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점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39조(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1.22.] [대통령령 제26925호, 2016.1.22., 일부개정]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공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다른 방법으로 게시하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3호, 2016.1.21., 일부개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 및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1.>

(앞쪽)

동물등록증		
동물등록번호 :		
소유자 정보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동물의 정보		
이름:	성별:	중성화: 0/X
축종:	품종:	털색:
생년월(일):	기타특징: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input type="checkbox"/> [직인]		
100mm×60mm [백상지(150g/m ²)]		

(뒤쪽)

변경내용	일자/확인 인
(변경항목)	(변경내용) (일자)/(확인서명)

* 이 등록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시장·군수·구청장: 주소 및 전화번호

비고 : 동물등록증의 재질과 규격은 자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1.>

공고 번호 제 호

동물보호 공고문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동물의 정보

축종

품종

털색

보호동물사진
(5X6Cm)

성별

암 / 수 / 미상

중성화 여부

예 / 아니오 / 미상

특징

2. 구조 정보

구조일

구조사유

구조장소

공고기간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대표자
---------	-----

주소

전화번호

4. 기타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

[별표 12] <개정 2013.12.31>

등록 등 수수료(제48조 관련)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가. 신규

-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나. 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무료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가. 신청비: 1건당 10만원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부담한다.
 -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3. 영업의 등록 · 신고 또는 변경신고
- 가. 영업등록: 1만원
 -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만원
 - 다. 등록사항 및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1만원
 - 라. 등록증 및 신고증의 재교부: 5천원

수의사법

[법률 제13028호, 2015.1.20., 일부개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제21조(공수의)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고등교육법

[시행 2015.12.31.] [법률 제13702호, 2015.12.31.,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시행 2015.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902호, 2015.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을 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12.9.28>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제15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물명	규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타	-	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나. 인건비

- ①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노임단가 기준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0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금액 등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시장가격을 적용한다. 단, 시장가격을 적 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 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참 고 자 료 (사 업 개 요)

1. 유기동물 보호사업

○ 유기동물 보호관리

- 마포구 : “마포구 수의사회” 소속 관내 44개 동물병원 중 위탁업체에 응모하여 선정된 16개 병원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신청업체 대표자와 마포구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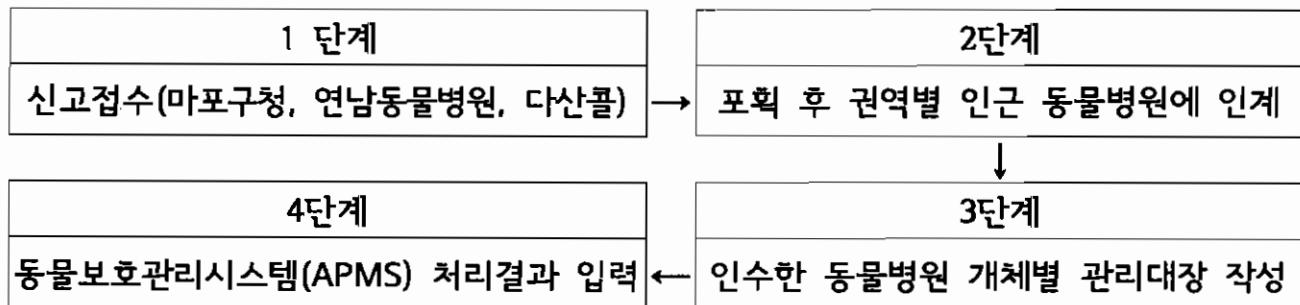
○ 위탁업체 : 마포구 수의사회(구역별 동물병원장 18명)

- 위탁기간 : 2014. 4. 2. ~ 2016. 12. 31.
- 소요예산 : 176,740천원(구비 : 88,370천원, 시비 88,370천원)

○ 유기동물보호 주요 운영 내용

- 유기동물 입장에서 바라본 안전한 구조 활동
- 전문수의사 인력 활용에 따른 안전한 동물보호 관리
-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관리 및 동물보호 복지사업 투자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IPS) 입력철저 및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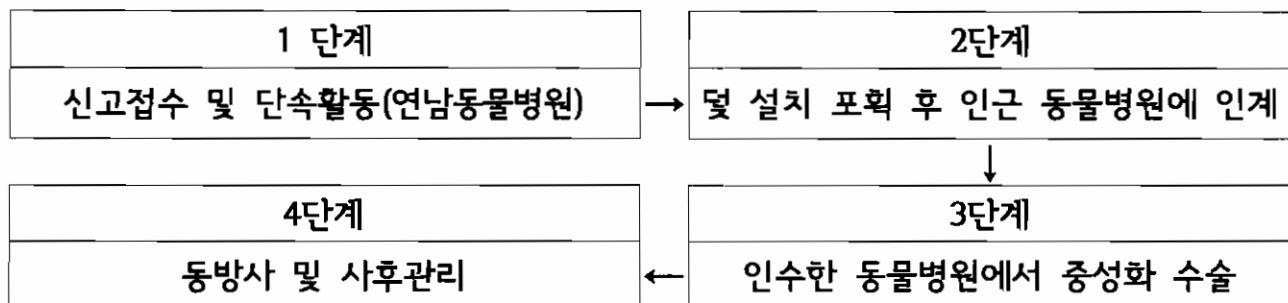
○ 유기동물 단계별 처리시스템 세부처리 내역



2. 길 고양이 TNR(중성화) 사업

- 과거방식 : 포획 및 덫을 설치하여 생포 후 동물보호소에 일정기간 계류 한 후 입양 불가시 안락사 조치(길 고양이 포획 후 안락사)
- 현재방식 : 중성화정책[TNR]사업방식(유해동물론자와 동물보호론자 모두가 만족함)
 - 1) 길 고양이의 집단서식지에 덫을 사용하여 포획(Trap)
 - 2) 불임수술 (Neuter)
 - 3) 방사(Return) 절차의 중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방식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주요 운영 내용
 - 유기동물 입장에서 바라본 안전한 구조 활동
 - 전문수의사 인력 활용에 따른 안전하고 투명한 의료체계 구축
 - 본 사업 홍보활동 전개에 따른 길고양이 인식 변화 유도
 - 16개 동물병원 참여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홍보 활동 전개

○ 길고양이 TNR 사업 단계별 처리시스템



▣ 최근 3년간 처리현황 : 2013년 ~ 2015년 상세처리 내역

구분	처 리 내 역								축종별 처리실적			
	계	반환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중성화 (TNR)	보호 (계류)	계	개	고양이	기타
2013	1,076	118	312	117	227	52	250	0	1,076	364	700	12
2014	1,007	146	383	6	199	39	234	0	1,007	347	641	19
2015	851	135	248	0	142	30	265	31	851	268	565	18
계	2,934	399	943	123	568	121	749	31	2,934	979	1,906	49

■ 유기견 1두당 처리비용 : 160,000원 (서울시 유기동물 사업 원가 적용)

항목	구조비	의료비	보관비(20일계류)	사체처리비	일반관리비(인건비 등 기타잡비)
금액	30,000원	30,000원	40,000원	10,000원	50,000원
합계	96,000원				

■ 길고양이(TNR) 1두당 처리비용 : 150,000원 (서울시 유기동물 사업 원가 적용)

항목	구조비(포획·재료비)	의료비(수술비포함)	일반관리비(인건비 등 기타잡비)
금액	30,000원	90,000원	30,000
합계	150,000원		

3.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사업

■ 등록대상 [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 등록대상동물(약25,000두) : 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2015. 10. 31현재 반려동물 등록두수

계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비고
10,198마리	4,548마리	4,762마리	888마리	

■ 등록방법 및 등록수수료 [법 시행규칙 48조 별표12]

등록방법	등록수수료(동물소유자)	대행업체수수료	비고
내장형(목 뒤 체내삽입)	1만원	3천원	- 내외장형 칩/인식표를 소유자가 대행기관에서 직접구매
외장형(목걸이형)	3천원	3천원	* 지역별, 병원별 가격 차이가 있음.
인식표(목걸이형)	3천원	3천원	

■ 등록절차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등록대행업체 방문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등록대행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MS 동물등록 정보확인 또는 정보입력 ·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 시술 등 · 등록신청서 송부 ⇒ 자치구청장
구 청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신청서 접수, 동물등록처리, 동물등록증 발급
등록동물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등록증 수령 (동물병원 접수증 지참 구청방문 수령)

▣ 등록방법

- 무선개체식별장치(マイクロチップ) 장착 또는 인식표에 의한 등록제 실시
 - 마이크로칩(기술은 수의사가 실시)
 - 장점 : 동물 몸속(양쪽어깨 사이 피하지방)에 장착하여 분실위험이 없음
 - 단점 : 일부 반려견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 발생
 - 인식표
 - 장점 : 몸 밖에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여 의료적 부작용 없음
 - 단점 : 분실위험이 높고,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제거 후 동물유기가 가능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으로 등록사항 기록·유지·관리